



즐거움 체육! 건강한 시민! 행복한 구리!

구리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 관리·운영지침

2025. 01.



구리시체육회
GURI CITY SPORTS COUNCIL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정의)	1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시간)	1
제5조(휴관일)	2
제6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2
제7조(예약 및 이용 절차)	2
제8조(이용료 징수 및 환불)	3
제9조(이용료의 결제)	3

제3장 시설 운영 수칙

제10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3
제11조(금지행위)	4

제4장 안전 및 사고관리

제12조(안전관리)	4
제13조(사고책임)	4

제5장 운영자의 권한 및 책임

제14조(운영자의 권한)	5
제15조(운영자의 책임)	5

제6장 민원 접수 및 처리

제16조(민원의 접수)	5
제17조(정보보호)	5
제18조(처리기간)	5

제7장 기타

제19조(특례사항)	6
제20조(홍보 및 교육)	6
제21조(구리한강시민리그 운영)	6

별표

제1호(수탁체육시설 현황)	7
제2호(이용료 기준)	8
제3호(구리한강시민리그 운영규정)	9

구리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 관리·운영지침

제정 2025. 01. 24.

개정 2025. 05.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구리시체육회가 구리시로부터 수탁받은 체육시설 4개소(구리왕숙체육공원·구리시립테니스장·구리시민운동장·구리시야구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촉진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구리왕숙체육공원(이하 “왕숙체육공원”이라 한다)·구리시립테니스장(이하 “시립테니스장”이라 한다)·구리시민운동장(이하 “시민운동장”이라 한다)·구리시야구장(이하 “야구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모든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구리시로부터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구리시체육회를 의미한다.
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시간)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계절이나 체육시설별 사용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 시간은 다음 날 체육시설 정상화 준비를 위하여 21:00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체육시설별 운영시간>

왕 숙 체 육 공 원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사위장)	(주간)06:00~18:00 / (야간)18:00~22:00 단, 축구장 및 풋살장은 23:00까지 운영
시 립 테 니 스 장	(주간)06:00~18:00 / (야간)18:00~22:00
시 민 운 동 장 (축 구 장)	(주간)06:00~18:00 / (야간)미운영
야 구 장	06:00 ~ 22:00

1. 계절구분: (동절기) 11월~3월 / (하절기) 4월~10월
2. 조명시설 운영시간(*조명 사용 시 야간요금 부과)
 - (동절기) 오전 6시 ~ 오전 8시 / 오후 18시 ~ 오후 11시
 - (하절기) 오전 6시 ~ 오전 7시 / 오후 19시 ~ 오후 11시

제5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 설 연휴(신정, 구정), 추석 연휴
2. 임시휴관: 시설의 정비, 보수공사 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6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파손 시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또한, 비정기적인 대규모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일시적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이용 절차) 시설 예약 및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 시기·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시스템(우선)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한 예약
2. 예약절차(온라인)
 - 가. 온라인 예약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관내 거주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必)
 - 나. 다음 달(익월) 사용 분(선착순) 또는 상시 예약
 - 다. 예약 완료 후,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최종 예약 확정
3. 예약 일정 및 사용기간

구분			예약일정	사용기간
테니스장	1차	관내	매월 20일 23:00 ~	익월 1일 ~ 15일
		관외	매월 25일 23:00 ~	
	2차	관내	매월 01일 23:00 ~	익월 16일 ~ 말일
		관외	매월 06일 23:00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관내		매월 20일 09:00 ~	익월 1개월
	관외		매월 25일 09:00 ~	

4. 예약 우선순위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나. 시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체육회 프로그램 및 회원단체(소속 클럽)
- 다. 관내 거주자
- 라. 관외 거주자

제8조(이용료 징수 및 환불) ①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의 금액과 요금 감면범위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제2호]와 같다.

② 이용자 개인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 하는 경우 환불신청서(별도양식)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불규정>

전 액 환 불	사용일 5일 전,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운영자의 불가피한 사정
10% 공제 후 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환 불 불 가	당일 취소

제9조(이용료의 결제) 결제는 온라인 결제(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및 현장 결제(카드) 방법으로 한다.

제3장 시설 이용 수칙

제10조(이용자 준수 사항)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금지
2. 체육시설 내 지정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금지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팀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노상방뇨 및 취사행위 금지
5. 체육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금지(원상복구 또는 변상)
6. 체육시설 내에 반려동물 동반금지(단, 시각장애우 도우미견 제외)
7. 체육공원 내에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금지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의 위에 것만 해당한다)
8. 체육공원 내에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금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기타(운영시간 준수, 공공질서 유지, 위생관리, 관리자 지침 준수 등)

위반횟수	패널티 적용	비고
1	사용제한 1개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반 횟수 누적 적용
2	사용제한 3개월	
3	영구 사용제한	

제11조(금지 행위) 체육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파손, 훼손 행위
2. 운영자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의 사용
3. 위험 물질 반입 및 사용

제4장 안전 및 사고 관리

제12조(안전 관리) 운영자는 시설 내 응급 의료 장비(자동심장충격기(AED), 구급함)를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제13조(사고 책임) 시설 내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이용자가 책임진다.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운영자가 책임지며, 이용자는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5장 운영자의 권한 및 책임

제14조(운영자의 권한)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운영 및 관리(시설 및 장비의 점검, 유지·보수, 운영 규정 제정 및 공지)
2. 예약 및 이용 통제(이용 신청 승인, 우선 배정, 예약 변경·거부 및 이용 제한)
3. 이용료 부과(시설 사용료 징수, 추가 요금 부과(조명료 등), 미납자 제재)
4. 이용 제한(규정 위반, 시설 훼손, 공공질서 위반 시 이용 중지 및 제한)
5. 안전 및 환경 관리(안전 수칙 요구, 위생 상태 점검, 위험 물품 반입 금지)

제15조(운영자의 책임)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시설 안전 관리(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2. 이용자 보호(개인정보보호, 안전 교육 제공,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피해자 지원)
3. 환경 유지(시설의 청결 및 위생 관리, 이용 후 원상 복구 상태 유지)
4. 공정한 운영(예약 및 배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간 형평성 유지)
5. 법적 준수(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며, 시설 운영에 반영)

제6장 민원 접수 및 처리

제16조(민원의 접수) 운영자는 국민신문고, 운영자 홈페이지, 유선, 방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시 민원 접수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17조(정보보호) 운영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비공개 민원의 경우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처리기간)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만약 민원 처리 소요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처리가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연장 처리 시에는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해 사전 통지한다.

제7장 기타

제19조(특례 사항) 천재지변, 대규모 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및 교육) 운영자는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 대상 생활체육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21조(구리한강시민리그 운영) 야구장은 운영자 주최 구리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매년 “구리한강시민리그”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별첨 제3호]의 운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부칙(제정 2025. 1. 24.)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구리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변경 및 개정 사항은 구리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3 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25. 5. 14.)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구리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수탁체육시설 현황

□ 구리왕숙체육공원

구 분	시설개요
위 치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701
부지면적	57,479㎡
건축물	868.72㎡(연면적), 지상 3층
체육시설	축구장 1면(인조잔디), 풋살장 1면(인조잔디). 테니스장 17면(인조잔디 10면, 하드 7면)
부대시설	주차장, 조명탑, 분수, 파고라, 의자, 조형물, 야외운동기구 등

□ 구리시립테니스장

구 분	시설개요
위 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51-6 일원
부지면적	6,896㎡
건축물	사무실 1개, 창고 5개(컨테이너)
체육시설	인조잔디 6면
부대시설	주차장, 심판대 등

□ 구리시민운동장

구 분	시설개요
위 치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100(아천동 231번지) 일원
부지면적	27,014㎡
건축물	화장실 1개, 사무실 1개, 창고 1개
체육시설	천연잔디 2면
부대시설	골대 2개, 선수대기석 2개, 구령대 1개

□ 구리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야구장)

구 분	시설개요
위 치	경기도 구리시 코스모스길 14번길 249 일원
부지면적	30,500㎡
건축물	사무실 등 8개(컨테이너)
체육시설	중학교 야구장 1개, 고등학교 야구장 1개, 사회인야구장 1개, 부속시설
부대시설	야구장, 더그아웃, 기록실, 창고 등

[별표 제2호] 이용료 기준

왕 체 공	숙 육 원	테니스장 (1 7 면)	<table><tr><th rowspan="2">이용요금 (1시간)</th><th colspan="2">평일</th><th colspan="2">주말 및 공휴일</th></tr><tr><th>주간</th><th>야간</th><th>주간</th><th>야간</th></tr><tr><td>관내</td><td>5,400</td><td>10,000</td><td>10,000</td><td>15,000</td></tr><tr><td>관외</td><td>16,200</td><td>30,000</td><td>30,000</td><td>45,000</td></tr></table> 1. 테니스장의 경우, 1면 4명 미만 이용시, 4명 요금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이 1일 사용가능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연습사용료를 적용한다. 3.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전용사용자가 11면~15면 사용시 5퍼센트를 할인하고, 16면 이상 사용 시 10퍼센트를 할인한다. 5.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짜 및 시간에 연속해서 전용 사용하는 경우의 전용 사용 면수는 사용가능 전체 면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6. 전용이용 구성원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퍼센트를 할증한다.	이용요금 (1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400	10,000	10,000	15,000	관외	16,200	30,000	30,000	45,000
		이용요금 (1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400	10,000	10,000	15,000																
		관외	16,200	30,000	30,000	45,000																
		축 구 장	<table><tr><th rowspan="2">이용요금 (2시간)</th><th colspan="2">평일</th><th colspan="2">주말 및 공휴일</th></tr><tr><th>주간</th><th>야간</th><th>주간</th><th>야간</th></tr><tr><td>관내</td><td>50,000</td><td>65,000</td><td>70,000</td><td>100,000</td></tr><tr><td>관외</td><td>150,000</td><td>195,000</td><td>210,000</td><td>300,000</td></tr></table> 1. 초과 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 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할증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이용 구성원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퍼센트를 할증한다. 3. 구리왕숙체육공원 축구장은 평일 13시부터 17시까지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0,000	65,000	70,000	100,000	관외	150,000	195,000	210,000	300,000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0,000	65,000	70,000	100,000																
		관외	150,000	195,000	210,000	300,000																
풋 살 장	<table><tr><th rowspan="2">이용요금 (2시간)</th><th colspan="2">평일</th><th colspan="2">주말 및 공휴일</th></tr><tr><th>주간</th><th>야간</th><th>주간</th><th>야간</th></tr><tr><td>관내</td><td>22,000</td><td>30,000</td><td>30,000</td><td>40,000</td></tr><tr><td>관외</td><td>66,000</td><td>90,000</td><td>90,000</td><td>120,000</td></tr></table>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22,000	30,000	30,000	40,000	관외	66,000	90,000	90,000	120,000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22,000	30,000	30,000	40,000																		
관외	66,000	90,000	90,000	120,000																		
샤 위 장	일반 1,000원, 노인(65세 이상)·소인(3세 이상 6세 미만) 500원																					
시 립 테니스장	테니스장 (6 면)	<table><tr><th rowspan="2">이용요금 (1시간)</th><th colspan="2">평일</th><th colspan="2">주말 및 공휴일</th></tr><tr><th>주간</th><th>야간</th><th>주간</th><th>야간</th></tr><tr><td>관내</td><td>5,400</td><td>10,000</td><td>10,000</td><td>15,000</td></tr><tr><td>관외</td><td>16,200</td><td>30,000</td><td>30,000</td><td>45,000</td></tr></table> ○테니스장의 경우, 1면 4명 미만 이용시, 4명 요금을 적용한다.	이용요금 (1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400	10,000	10,000	15,000	관외	16,200	30,000	30,000	45,000	
이용요금 (1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400	10,000	10,000	15,000																		
관외	16,200	30,000	30,000	45,000																		
시 민 운 동 장	축 구 장 (2 면)	<table><tr><th rowspan="2">이용요금 (2시간)</th><th colspan="2">평일</th><th colspan="2">주말 및 공휴일</th></tr><tr><th>주간</th><th>야간</th><th>주간</th><th>야간</th></tr><tr><td>관내</td><td>50,000</td><td>-</td><td>70,000</td><td>-</td></tr><tr><td>관외</td><td>150,000</td><td>-</td><td>210,000</td><td>-</td></tr></table>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0,000	-	70,000	-	관외	150,000	-	210,000	-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관내	50,000	-	70,000	-																		
관외	150,000	-	210,000	-																		
야 구 장	야 구 장 (3 면)	<table><tr><th rowspan="2">이용요금 (2시간)</th><th colspan="2">평일</th><th colspan="2">주말 및 공휴일</th></tr><tr><td colspan="2">야구장 30,000 조명탑 20,000</td><td colspan="2">50,000</td></tr></table>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야구장 30,000 조명탑 20,000		50,000												
이용요금 (2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야구장 30,000 조명탑 20,000		50,000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전용사용료 등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별표 제3호] 구리한강시민리그 운영 규정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구리한강시민리그』 운영 규정

[제1조] 리그 목적

1. 리그의 명칭은 ‘구리한강시민리그’ (이하 “본 대회” 라 칭함)라 한다.
2. 구리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야구장) 프로그램으로서 본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구리시 야구 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 도모
 - 2) 지역 간 화합과 봉사활동
 - 3) 생활 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 및 건강 도모
3. 본 리그는 ‘구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구리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주관으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1. 모든 경기 및 일정은 ‘구리시야구소프트볼협회’ 책임하에 운영한다.
2. 경기 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3. 경기는 양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최소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 예정시각’에 시작한다.
4. ‘경기 예정 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 (10:0 기록)
 - ※ 경기 예정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할 때마다 1점씩 9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5. ‘경기 예정 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 단, 경기 시간 지연 시 심판의 경기 개시 선언 후 10분이 경과 하면 몰수패로 인정.

6.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의 경우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7.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8.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 또는 60분을 초과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9.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이면 선언된다.
10. 출장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 ※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 금지시킬 수 있다.
 - ※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꼭 동일하여야 한다.
 - ※ 유니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당일 출전하지 않는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 하여도 무방하다. (단, 동일 경기에 복수의 선수가 같은 배번으로 출전 불가, 바지 배번은 상관없음)
 -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11.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물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2. 경기 진행은 심판 2명(주심1명, 선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4개 제공)
13.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30분 전까지 기록원에게 작성 제출한다.(게임원 어플 오더 제출가능)
 - ※ 선수출신자를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 타순에 '☆'표 기입
14. 경기의 승리 팀은 운동장 청결 유지 및 정비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5.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방치 시, 해당 팀은 리그퇴출 및 향후 리그 재가입 자격에 대해 제한할 수도 있다.
16. 공원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공원 내 전체 금연구역
17. 그 밖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 rule을 통해 매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3조] 경기의 참가비

1. 당해 참가팀은 참가비를 납부한 팀에 한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다.
2. 참가비는 공고문에 게시된 참가비(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다. ※ 참가비는 공고문에 게재한다.

[제4조] 몰 수 패

1.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의 당일 경기는 몰수패 처리를 한다.
2.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출신 선수의 초과로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6조 선수등록 참조)
※ 단, 게임이 끝나기 전에 정식으로 제소한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
3. 상대팀 몰수로 인한 해당 팀 몰수금 요청은 경기 종료 이후 게임원(구리한강시민리그) 몰수게임금 요청게시판에 양식 참고하여 작성 하도록 한다.
※ 몰수금 요청 시 해당 팀은 작성 2주 이내에 몰수금(1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미지급 시 리그운영본부 심의 후 리그비 반환 없이 퇴출 (*확약서 제출)
4.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5. 동호회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6. 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잔여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리그에서 자진 탈퇴 의사로 간주한다.
※ 단, 부득이한 일정(코로나, 결혼식)은 필요서류 제출 후 연기 할 수 있다.
7. 부정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 다른 팀의 제소 또는 집행부에서 발견 시 1회 또는 1명 적발 시 해당선수 또는 감독 플레이오프 출전정지, 2회 또는 2명이상 적발 시 해당 팀 플레이오프 제외 또는 몰수패(순위가 정해지기 전 발견 시 플레이오프 제외, 순위 정해지고 발견 시 몰수패)

[제5조] 선수 및 심판 상벌 제도

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 (헬멧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집행부 등에 대한 허위 낭설유포로 인해 리그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1~4경기 출장정지 또는 구리한강시민리그에서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집행부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4주까지 출전 금지시킬 수 있다.

3. 개인 시상은 정규리그 각 조별 모두 해당되며 투수는 방어율, 다승, 탈삼진 3개 부문이고, 타자는 타율, 타점, 홈런 3개 부문으로 수상한다.

※ 규정 이닝 및 타석 적용

※ 개인 타이틀 동률시

- 방어율 : 이닝수가 많은 순 / - 다승 및 탈삼진 : 이닝수가 적은 순

- 타 율 : 타석수가 많은 순 / - 홈런 및 타점 : 타석수가 적은 순

4. 결승 토너먼트 결과로 감독상 및 결승전 MVP를 수상 한다.

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선수등록

1. 대회 참가자는 전원 스포츠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합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당사자가 진다.

2. 선수등록은 각 팀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 출전 15일 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가) 스포츠 공제보험 증권번호

나) 주민번호 앞 6자리

다) 거주지 주소 (동까지만)

라) 출신 고등학교

마) 등번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학생은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등은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 출신자 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여 경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경기 출전 선수는 게임원(구리한강시민리그)홈페이지 등록현황에 사진(얼굴), 생년월일, 출신고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게임원(구리한강시민리그)홈페이지 내 등록현황에 공개(노출)가 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선수에 대해 상대팀의 제소가 있을 시 바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시즌 중에는 같은 부의 팀 간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6. 선수는 각 부 별 한 개 팀에서 선수등록 및 출전이 가능하다. (같은 부 2개 팀 이상에서 출전하였다가 제소 또는 집행부에 발견됐을 경우 양쪽 팀 다 최근 마지막경기를 몰수 처리하고 해당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이 불가하며, 나머지 경기 출전할 팀도 결정해서 집행부에 알리도록 한다.)

[제7조] 선수 출신의 선수자격

1. 고등학교 이상의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재된 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 단, 일요 더블부에 한해서 1학년에만 등록되어 있고, 경기 출전 기록이 없다면 이는 비선수출로 간주한다.

2. 서울대 야구부 출신의 경우 비선수출로 인정한다. (단, 현역 선수 제외)

3. 독립루키부의 경우 중학교 선수출신 및 서울대 야구부 출신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하여 출전을 불허한다.
4.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다.
 - ※ 선수 등록 후 상대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출신 중학, 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선수 출신 출전
 - ※ 더 블 - 2명까지 출전 가능 2이닝(아웃카운트 연속 6개) 투구 가능
<2이닝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수로 교체 시 더 이상 선수출신 투구 불가>
 - ※ 싱 글 - 1명까지 출전 가능 (투수 불가)
 - ※ 루 키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 불허
 - ※ 독립루키 -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 불허
6. 선수 출신자 예외 경우
 - ※ 더 블 - 만 40세 이상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5년 리그 기준)
 - ※ 싱 글 - 만 45세 이상 (198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5년 리그 기준)
 - ※ 루 키 - 만 45세 이상 (198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5년 리그 기준)
 - ※ 독립루키 - 만 50세 이상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5년 리그 기준)
7.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 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8. 외국인 및 유학생은 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 (출신고가 외국일 경우)
 - ※ 단, 해외 유학 생활 중 야구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부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1. 본 대회는 승점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승-3점, 무-1점, 패-0점)
2.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3.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1) 몰수패 유무 (2) 승자승 (3) 승률 (5) 최소 실점 (6) 최다 득점
 -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 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 수에서 제외된다.

- 또한 (2)항의 승자승이 다자간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 선발 투수의 승리 요건은 최소 2 이닝 이상 투구를 원칙으로 한다.

5.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 이닝으로,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 타석으로 한다.

6. 시합 도중 물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제9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1.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일요 더블(1개조)

- 상위 4개팀 플레이오프 경기진행.

※ 일요 싱글(1개조)

- 상위 4개팀 플레이오프 경기진행

※ 토요 싱글(1개조)

- 상위 4개팀 플레이오프 경기진행

※ 토요 루키(2) 및 일요 루키(3), 평일 루키(1), 평일 야간 루키(2) (8개조)

- 각조 상위 4개팀 플레이오프 경기진행

※ 토요 독립루키(2) 및 일요 독립루키(3) (5개조)

- 각조 상위 4개팀 플레이오프 경기진행

※ 단, 무승부 시 추첨을 통하여 승부를 가린다.

2. 조별 최종 결승전

※ 단, 2시간 30분 경기로 시간제한을 둔다.

※ 2시간 2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동점 시 1회 연장을 하며,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추첨으로 우승을 가린다.

3. 결선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투수와 타자(야수) 상관없이 리그 4경기 이상 출전 기록 여부로 정한다.

4. 플레이오프 참가 선수는 해당 경기 참가 시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사진이나 캡처본 해당불가)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팀 몰수패 및 리그비 환불 없이 퇴출

[제10조] 리그운영

1. 당해 연도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 경기를 일으키는 팀,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리그운영본부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리그운영본부의 심사를 거쳐 경고 2회 후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리그 참가비(계약금 포함)의 환불은 대표자회의 이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리그운영본부 승인 후 제3의 팀에 양도는 가능하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리그가 중단될 시 차기년도로 넘길 수 있으며, 잔여 경기 진행 불가 시 남은 경기 수만큼 리그운영본부와 협의하여 환불 처리될 수 있다.

4. 참가팀 중 리그운영 담당자에게 부도덕한 언행 등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보호조치에 따라 리그 가입 제한조치 시킬 수 있다.

5. 리그운영관련 규정 미 준수 등 리그운영본부의 심의결과 참가 제한 및 참가 부(조)조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6. 일정취소 및 변경, 구장사용변경, 천재지변 등 게임원(구리한강시민리그)홈페이지 공지 및 팀별 대표에게 최소 2시간 전 알릴 수 있다.

※ 공지 미확인 또는 팀 사정에 의해 연락이 안 될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확약서제출)

[제11조]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연기)여부

1. 경기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우천, 강설, 폭염, 한파 등이 발령되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그운영본부 및 집행부에서 경기취소(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 경기 개시 전 리그운영본부에서 기상청 날씨누리(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 단, 경기 개시전날 21시 ~ 07시에 비 또는 눈이 올 예정인 경우 팀에서 직접 검색확인하며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취소(연기) 하도록 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기준(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2) 21시 ~ 07시에 비가 올 예정인 경우

- 강수확률 60%이상, 강수량1mm/시간당 이상 일 경우 1(07시)경기, 2(09시)경기, 3(11시) 경기 우천연기 한다.

3) 21시 ~ 07시에 눈이 올 예정인 경우

- 강수확률 60%이상, 적설량0.2cm/시간당 이상 일 경우 1(07시)경기, 2(09시)경기, 3(11시) 경기 설천연기 한다.

※ 단, 기상청 날씨누리(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미확인 후 구장을 나왔을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경기개시 후 집행부에서 기상청 날씨누리(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4.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선수보호차원에서 일정 연기 할 수 있다.

※ 폭염 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5. 혹한기 한파로 인해 선수보호차원에서 일정 연기 할 수 있다.

※ 한파 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2도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5도 이하가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리그운영본부는 기상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연기)여부에 대해 리그 전날 공지한다.

6. 물수 및 경기연기, 경기취소 등 공지 관련하여 리그운영본부에서 최소 2시간 전 연락(문자) 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1. 경기 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리그운영본부 및 집행부 측의 결정에 따른다.
3. 우승팀에 한해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차기년도 참가 부를 승격시킬 수 있다.
4. 포수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포수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 안전장구 미착용 시 경기 진행불가, 이 사항에 대해 경기지연 시 [2조] 4항을 적용하여 물 수 된다.
5.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야구배트는 5드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또한, 집행부에서 인정한 배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배트 배럴이 100% 알로이 소재만 착용가능 (단, 여성 선수는 제외))
6. 매 경기 팀당 2회까지 합의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합의 판정 요청 시 팀 감독만이 정식으로 타임 후 심판에게 합의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참가팀은 수시로 게임원(구리한강시민리그)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공지사항, 게임일정 및 구장변경 건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 ※ 위 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은 리그별 자체 연락망을 통해 공유한다.
 - ※ 공지사항 미확인 건에 대해서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8.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9. 경기운영위원, 감독관을 둔다.

제1항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 필드 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 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 서비스”를 총칭한다.

제2항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3항 [초상권 동의]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공표되어 사용 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제4항 [마케팅 동의]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저작물에 저작권을 갖고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 ※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